

제주미래비전연구원 협동조합 인재양성 아카데미

제3강좌 : 협동조합 회계 특징과 사례

“협동조합 회계의 특징” 과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

- 일시 : 2013. 5. 30(목) 14:00~
- 장소 : 제주테크노파크 회의실(10층)
- 강사 : 강석반(강석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강순원(한살림제주 상무이사)



제주미래비전연구원
Jeju Future Vision Institute

강 연 문

협동조합의 회계 및 세무 개관(概觀)

2013. 5. 30

강 석 반

(강석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금과 사람의 존엄성

경제현상이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의 조세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세금에 관한 법은 사람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수단법(手段法) 내지 기술법(技術法)으로 전락한다. 법이란 본래 차가운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금에 관한 법이 지나치게 수단법 내지 기술법으로 전락하는 경우 조세법에는 더욱 냉혹성만 남게 될 것이다.

원래 조세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보다 잘살기 위해 인류 문명이 만든 제도의 하나가 세금이다. 세금을 문명의 대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를 의미한다. 기술법으로 전락한 조세법에서는 종종 마치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 사는 것으로 착각될 정도의 규정을 내포하기 일 수이다.

사람을 위해 세금이 있는 것이지 세금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때로는 망각되고 있다. 즉, 수단법 내지 기술법적 시각에서 세금에 관한 법제를 제안하고 그러한 세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이다.

세금을 연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세금에 관한 법제를 만들고, 그렇게 제정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지도적(指導的)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조세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만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세금이 문명의 대가이되 시민동의에 그 뿌리를 둔 산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세금의 주인이라는 철학이 투철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세금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2003년, 서울시립대 최명근 교수, 일간지 투고의 글 중에서〉

차 례

1. 세무회계의 이해와 실제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 법 인 세
4. 부가가치세
5. 협동조합의 회계 및 세무
6. 맺 는 말

1. 세무회계의 이해와 실제

① 회계 :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다.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정보이용자인 투자자, 채권자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보고양식을 따르게 된다.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차원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문제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를 지니며, 개인적인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내용을 많이 포함한다.

② 세무와 회계 : 세무는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법인 및 개인)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는 회계와 연관되면서 이뤄짐과 동시에 또한 별도의 영역이다.

기업(사업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실체(자산, 부채, 손익 거래 등)에 대해 경리한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마감(결산)하여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형식으로 보고한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등)와 그 외 기업자체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현행 조세체계는 과세주체(국세/지방세) 또는 조세용도(보통세/목적세), 조세 전가여부(직접세/간접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 볼 수 있다.

① 국세

가. 보통세

- 직접세 : 법인세, 종합소득세(양도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나.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 국세는 조세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주로 채택하고 있음.

② 지방세

가.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등

나.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세목 및 세액 등을 고지하는 납세제도를 주로 채택하고 있음(유통세 성격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임)

※ 2011년 지방세 세목은 취득 및 등록세가 함께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목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등록면허세가 신설됨(세율은 변동 없음)

3. 법 인 세

①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실현 소득' 및 자본납입 등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지며, 세율은 10~22%(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0%)로 과세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납세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가 대부분이므로 매년 3월31일 신고기한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의 소득에 대해 1억원을 과세단위로 소득원천별로 나눠서 종합과세(분류과세) 하며,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합과세
-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일정소액 이하는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 분류과세

② 법인세의 계산구조

법인은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단위로 하여 과세하며, 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결산을 통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법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세대상소득)/손금(필요경비)을 가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칭하며, 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손금불산입)의 예를 들면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접대비한도초과액, 법인세(소득세)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회계적으로는 정당한 비용이나 세법에서는 정책적 목적 등으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소득 등에 대해 그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과세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 1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100만원 (대표자 상여)라고 소득처분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소득이 100만원 늘어남과 동시에 대표자의 근로소득도 100만원 증가함으로써 법인세 외에 대표자의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제주법인 손익계산서			법인세 계산 흐름도	
매출		1,000	<u>당기순이익 150</u>	
매출원가		600	(+) <u>익금산입 30</u>	
	매출총이익	400	법인세비용 10	
판매관리비		250	세금과공과(과태료·자산취득세) 20	
직원급여	100		(-) <u>손금산입 10</u>	
복리후생비	20		보험료(기간경과분) 10	
접대비	2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70	
세금과공과	30		(-) <u>이월결손금 10</u>	
감가상각비	20		과세표준 160	
광고선전비	10		산출세액[2억원:10%,2억원초과:20% 등] (-)감면·공제세액 (+)가산세 총부담(법인)세액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소모품비	30			
지급수수료	10			
기타비용	10			
	영업이익	150		
영업외수익		2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영업외비용		10		
이자비용	10			
	법인세차감전이익	160		
법인세비용		10		
	<u>당기순이익</u>	<u>150</u>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다양한 감면·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세특례의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 산출세액의 5%~30% 세액감면(최저한세 세율 7%) → 중소기업 육성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법에 정한 사업용 자산(의료기기, 제조시설 등을 말하며, 건물·차량·비품 등은 해당없음)을 구입한 경우 일정액(투자금액의 4~5%)을 세액공제 → 투자촉진 목적으로 일몰기한(매년)을 설정하고 그 특례의 지속여부와 공제 세율을 정하고 있음.

③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에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종교, 기예,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있어서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면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인가를 얻어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수익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한 의무, 즉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세여부는 법인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비수익(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정한도(사업소득 50~100%, 이자소득 100%)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법인세를 미리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규정으로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한 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006.2.9. 개정) **무척**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무척**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6.5. 개정)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12.30. 개정) **부칙**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중략) -----

4. 부가가치세

- 부가치세의 개념 : 다단계 일반소비세,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그리고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 세액은 전가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비례세에 속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서는 역진성이 문제된다.

- 부가가치세의 연혁 : 1976년 도입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하였고,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 유럽 여러나라들에서 채택하였다.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에 도입되었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도 동시에 제정되었다.

-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어떤 거래단계 사업자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면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간략히 파악할 수 있다.

(☞ 아래의 표에서 세율은 10%이며,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text{공급가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출세액}) - (\text{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 = \text{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영세율 : 부가가치세 완전면제

영세율(zero rating)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게 되어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및 기타 외화획득사업, 그리고 농어업관련 재화 등에 대해 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 면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부분면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권리가 없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데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 등의 공급하는 자의 납세준용 능력이 부족한데도 그 까닭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의 사례로는 미가공식료품(쌀,채소 등), 주택의 임대, 의료보건용역, 교육(학원)용역, 금융보험용역 등을 들 수 있다.

- 겸업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동시에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약국을 들 수 있는데, 병원에서의 조제의뢰에 따른 용역제공을 면세이지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이다. 이외에도 슈퍼마켓(농산물과 공산품 등 판매) 등이 있다.

-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즘은 고객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신용카드 체크기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미등록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6월의 사업의 공급과 매입 등에 대해 7월 25일, 7~12월의 현황에 대해서는 1월 25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간이과세자'로 정하여 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등의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소득세와의 연관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의 수입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즉, 부가세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이 높다는 것은 수입금액이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높다하더라도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상품 매입액 및 판매관리비 등)가 많다면 소득은 낮아지는 것이며, 그 반대는 높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 면세점과 제주도 전역 면세화, 그리고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

면세점이란 부가가치세, 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의 부담을 유보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예전부터 롯데면세점 등 여러 군데 있고, 내국인 면세점은 JDC 및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세(법인세)의 과세자율권 및 제주도 전역 면세화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말 제주도 입도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는 1차 합의를 하였고, 201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도입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호텔 숙박 및 토산품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제주도를 떠날 때 특정장소(예:제주국제공항)에서 사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는 제주도의 관광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 협동조합의 회계 및 세무실무

① 협동조합과 회계

우리나라에서 제정 고시된 회계기준은 크게 국제회계기준(IFRS), 일반회계기준, 그리고 올해 2월에 새로이 고시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나뉘볼 수 있다.

각 회계기준의 차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기준	중소기업기준
적용대상	-주권상장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일부)공기업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 로서 IFRS적용 하지 않는 경우	외감법 대상아닌 주식회사 로서 일반·IFRS 기준 적용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or)잉여금 처분계산서<선택가능>
유형자산 재평가	재평가모형 적용가능	재평가모형 적용가능	재평가모형 적용불가
배당금수익	배당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좌측과 동일)	(좌측과 동일) 다만,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금 받은 시점 인식 가능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정률법, 생산량 비례법(등)합리적 방법 적용가능	정액법,정률법, 생산량비례 법만 적용가능
채권·채무평가	현재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 배제가능
퇴직급여 산출	보험수리적방법	청산가치개념에 근거	청산가치개념에 근거
오류수정방법	- 중대한 오류는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등 - 이외 오류수정은 영업외손익 처리	(좌측과 동일)	영업외손익 처리

현재 협동조합만을 위한 회계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위의 세가지 회계기준에서 적용대상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대부분 협동조합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일반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을 행하며 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5절(회계)에는 회계 및 결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에서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각종 결산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협동조합이 갖는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조합원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기본전제로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 수입의 계상 및 각종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상호대사 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또한 일정금액(예: 건당 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등 정규증빙 수취 및 계좌이체 등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회계의 결산과정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산완료 시점에서 명확히 밝혀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잉여금)은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배당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10/100(사회적협동조합은 30/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수익(잉여금)이 생기면 10% 이상을 내부유보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손실보전→법정적립→임의적립→배당의 순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일반기업이 경우는 수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신규투자를 하는 것에 반해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까지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은 단기적인 경영실적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재정기조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도 일반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자금에 의한 배당보다는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본취지를 배당과정에 있어서도 반영한 결과이다.

② 협동조합과 세무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 조세특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제4조 (법인격과 주소)

- ①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법을 부과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세특례는 따로 둔 것은 없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정도의 특례가 2012년말 세법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제정(또는 개정)은 경제적 현실보다 늦게 이뤄진다. 이는 세법은 공익적 목적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요건(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한 과세나 부실과세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에 따른 조건이 구체화 되는 경우 이를 세법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현행 협동조합의 각종 조세특례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그 감면 조항 등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특례를 예시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수·축협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당기순이익과세는 해당 조합법인에서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을 대부분 인정하고, 그 당기순이익에 단일세율(현재 9%)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른 일반적인 법인세율(10~2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세무조정 사항도 접대비·기부금·퇴직급여 등 몇 가지만 하도록 하는 등 세법예의 순응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조합의 조합원 이용고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출자금(현재 1인당 1,000만원)에 따른 배당 역시 비과세하고 있다.

영농조합의 경우는 농업(작물재배업)소득에 따른 법인세는 면제하고, 농업외소득에 따른 법인세는 일정한도(현재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는 면제하고 있다. 배당에 있어서도 농업소득에 따른 배당은 전액 비과세 하고, 농업외소득에 따른 배당에 대해서는 일정액(현재 1인당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현재 5%) 및 분리과세의 특례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세액의 50% 감면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제

공하는 간병·아이 및 산후 돌보미·교육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전액 및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면제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위의 간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2013년 개정세법에 반영된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생활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정의】

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13.2.15.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6.2.9. 개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2013.2.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5.2.19. 법령개정)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5.2.19. 법령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005.2.19. 법령개정)

6. 삭제(99.12.31.)

7. 삭제(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2005.2.19. 법령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2005.2.19. 법령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2005.2.19. 법령개정)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2005.2.19. 법령개정)

▶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3.3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2.19. 법령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2.2.2.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2.19. 법령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009.2.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2.19. 법령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2.15. 개정)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2.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2.18. 개정)

-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12.2.2. 개정)
 -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2.18. 개정)
 -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2.2. 신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2.28. 개정; 2008.2.29. 직제개정)
- 이하 삭제(조문)

6. 맺 는 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회계기준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성격 내지는 회계기준의 순응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상호간 합의할 수 있는 재무관리시스템의 마련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개별 협동조합이나 영농(영어)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적에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통과됨으로써 해당 기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를 마련하기에는 시차적으로나 협동조합이 미비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마련은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애로점 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현실 세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협동조합 참여자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실제 건전한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결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모성 혜택이 아니라는 기본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다양한 협동조합은 인간성이 점점 상실해가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소금이며 또한 함께하는 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고 확인하는 것은 협동조합 참여자를 포함한 우리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MEMO

강 연 문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험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서 현재까지-

2013. 5. 30

강 순 원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험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서 현재까지-

강순원 (한살림제주 상무이사)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한살림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개념

-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어법이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상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의미의 consumer cooperative로 지칭함. 일본에서는 '소비자'라는 말 대신 '생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칭함.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받아들여 점차 소비자협동조합이란 말 대신 생활협동조합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함. 그 영향으로 1998년 생협법이 처음 제정될 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란 명칭을 법적 명칭으로 사용하게 됨.
- 한국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먹을거리 유통을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보건활동을 주요사업으로하는 의료생협, 대학시설운동을 중심으로하는 대학생협 등이 있음.
- 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초에는 발기인 300인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최근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고 출자금 제한을 없앴

2)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2011년 기준, 일부는 추산)

구 분	조 직 현 황			매 출	비 고
	조 합 원	회 원 생 협	매 장		
한살림	300,000세대	20개소	140개소	2,300억	
icoop	145,000세대	73개소	115개소	3,000억	
여성민우회	23,000세대	6개소	19개소	150억	
두레	110,000세대	23개소	78개소	790억	
합	578,000세대	122개소	474개소	6,264억	

3) 한살림 소개

- 이념 : 공생 순환하는 생명세계의 질서에 따른 조합원의 생활과 생산양식의 변화를 기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
- 목적 :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보다 나은 생활 개선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
- 활동내용
 - 물품사업을 통해 가격의 76%(쌀은 85%)가 생산자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함
 - 생태순환의 원리에 맞는 농업이 지속되게 함
 -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로 건강한 삶을 꾸려가게 직거래운동과 함께 다양한 생활문화운동 전개
 - 기후변화·농업과 식량위기·에너지 고갈·핵위협 등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운동 전개
- 부문별 활동
 - 밥상살림 :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이웃과 나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먹을거리 나눔
건강한 밥상차림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먹을거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참여 활동
 - 농업살림 : 생명이 살아있는 농업을 실천하며,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도농교류를 통해 함께 생명농업을 만들어 감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생태적 지역농업 유지·육성위한 기금운영
도농 공동체를 위한 교류와 협력활동
 - 생명살림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세상을 위해 노력함
생명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연구·출판
자연과 하나 되어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생활실천 운동
- 한살림 전국 현황
 - 구성 : 전국 21개 회원생협과 연구소, 생산자 조직
 - 규모 : 2012년말 기준 조합원 35만세대, 매출 2,500억 원

2.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설립의 필요성

(1) 생산측면

- 농업농촌의 위기 타개 : 수입개방의 본격화로 지역농업 괴멸위기

- 생태계의 보전 :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관행농업의 폐해 타개
-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 현금작물 위주의 단일작목 재배에서 지역순환형 친환경 작부체제 전환

2) 소비측면

-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비
- 소비공동체를 통한 계획적 소비
- 생활속에서의 친환경적·계획적 소비생활과 공동체 구축

2) 준비과정

(1) 2005년 설립준비모임

- 한살림 제주생산자 및 일부 소비자 중심 준비위 모임 시작
- 지역농업 살림과 지역순환형 먹을거리체제를 중심으로 고민(목표)
- 조천읍 신촌리 생드르영농조합에 간이매장 개설, 공급사업 시작(공감과 시스템 구축)

(2) 2007년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 2007년 12월 한살림제주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3) 창립

- 2008년 5월 한살림제주 창립대회(초대 이사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 2008년 7월 한살림제주 매장 개장(현 신제주 매장)

3) 창립과 기초다지기

- 2008년 창립 및 매장 개장
- 조합원 : 500~2,000세대
- 생산자 : 100여 가구
- 매출 : 3억에서 12억(손익분기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
매출 (천원)	목표	700,000	600,000	660,000	814,000	920,000	440,000
	실적						
	매장	122,455	297,047	364,253	405,918	666,820	252,657
	공급	211,373	249,298	284,592	355,880	559,616	132,244
	합	333,828	546,345	648,846	761,799	1,226,436	384,901
	목표대비(%)	47.7	91.1	98.3	93.6	133.3	87.5
	성장률(%)		63.7	18.8	17.4	61.0	95.1
조합원 (명)	목표	1,000	992	1,402	1,525	1,734	2,119
	(순증가)	(1,000)	(400)	(480)	(310)	(300)	(140)
	실적	592	922	1,215	1,434	1,979	2,118
	(순증가)		(330)	(293)	(219)	(545)	(209)
	목표대비(%)	59.2	82.5	61.0	70.6	181.7	149.3
	증가율(%)		156.0	131.8	118.0	138.0	139.3

4) 중기비전과 도약

(1) 기조

- 제주사회를 사회적경제 특별도로 만든다.
- 농업농촌 부흥 시범도로 만든다.
- 밥상주권을 지키는 지역순환형 농업체계를 구축한다.
- 생활공동체의 부활 시범도로 만든다.
- 제주도를 탄소제로 섬으로 만든다.

(2) 목표

① 농업부문 : 자급자족형 지역순환 농업체계 구축(지역물류 30% 이상)

- 공동체 강화를 통한 전업농가 확대와 농촌공동체 재생
- 식량작물 및 채소류 재배 확대를 통한 자급자족형 농업 체계 구축
- 양계·우유·육류 생산체계 구축(목장 포함)
- 신선식품 및 지역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가공, 유통체계 구축

② 산업사회 : 건강한 생활공동체 구축

- 몸·마음 건강사업
- 출산·보육·진학 상담 및 관련프로그램
- 취약계층·노령인구 복지사업
- 기후변화와 친환경농업관련 국제연대 사업

③ 탈도시화·다문화 : 세계 시민 연대와 협동

- 탈도시화·베이비부머 은퇴자 관련 사업
- 외국인 다문화 관련 사업
- 한살림여행, 대안(적정) 관광 관련 사업

④ 대안사회 운동 :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중심지화

- 조합원이 직접 만드는 대안에너지 사업
- 카셰어링(Car sharing) 등 네트워크 사업
- 기타 소통, 연대, 협동사업

3) 이용고 및 조합원 목표

(단위 : 원, 세대)

구 분		2013년(B)	2014년(C)	2015년(D)
이용 (매출)	이용고	1,800,610,000	2,500,000,000	4,000,000,000
	증감	(A/B)47%	(B/C)59%	(C/D)56%
조합원 (세대)	조합원	2,929	4,664	6,854
	순증가	950	1,640	2,190
	증감	(A/B)50%	(B/C)72%	(C/D)34%

3. 주요활동

- (1) 지역모임 : 신제주, 구제주, 구서귀포, 강정, 기타 읍면별 조직 구축
- (2) 소모임 : 요리, 육아, 청소년, 치유, 봉사 등 조직
- (3) 장터 : 한살림 매장을 중심으로 한 한살림장터 상설(조합원, 다문화 등 새로운 개념)
- (4) 강좌
 - 마음살림 : 명상·비폭력대화·철학상담·심리코칭
 - 음식살림 : 마크로비오틱, 향토티전음식, 사찰음식, 도시텃밭
 - 생활살림 : 임신, 육아, 교육
 - 몸 살 림 : 요가, 헬스, 명상
 - 문화살림 : 영화, 책, 기행, 영상, 음악
 - 적정기술 : 적정기술의 기초~목공까지
- (5) 도농교류 : 공동체별 수확축제(감귤·보리·참외...), 각종 수확, 잡초제거 등 농업현장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전국화(여행사업 연결)
- (6) 생명학교 : 자체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확대